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방법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신용카드로 납부가능)

주민/법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하여 절차에 따라 납부 진행



※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로 납부자 부담

금융기관(은행) 인터넷뱅킹 공과금 납부 서비스

기금/국고 선택조회 후 납부절차 안내에 따라 납부 진행(각 은행별로 다를 수 있음)



※ 한국환경공단 계좌로 이체시 미납으로 간주(공단 계좌 없음)

폐기물처분부담금 쓰임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다음의 정부재정사업에 사용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7조



※ 부과·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

콜센터 032-590-5093

※ 콜센터 운영기간 2024. 5. 31.까지

본사 및 환경본부 관할지역

구분	주소	관할지역
본사 폐기물처분부담금부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
수도권동부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 3층 310호	경기도 일부 (가평, 과천, 광주, 구리, 군포, 남양주, 동두천, 성남, 수원, 안성, 안양, 양평,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이천, 평택, 포천, 하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8길 82, 8층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부 (고양, 광명, 김포, 부천, 시흥, 안산, 양주, 연천, 파주, 화성)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 681번길 34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경북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9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충청권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6, 3층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제도운영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7, 3층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강원환경본부 제도운영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경춘로 2370, 8층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환경본부 제도운영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100	전북특별자치도
충북지사 제도운영부	충북 청주시 청원구 공향로 150번길 73, 6층	충청북도
제주지사 자원순환지원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5층 503호	제주특별자치도

※ 본 자료는 친환경용지(인스퍼에코 174g/m)를 사용하여 인쇄하였습니다.



www.budamgum.or.kr
2024년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유도하는 제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다음의 폐기물을 처분하는 자

생활폐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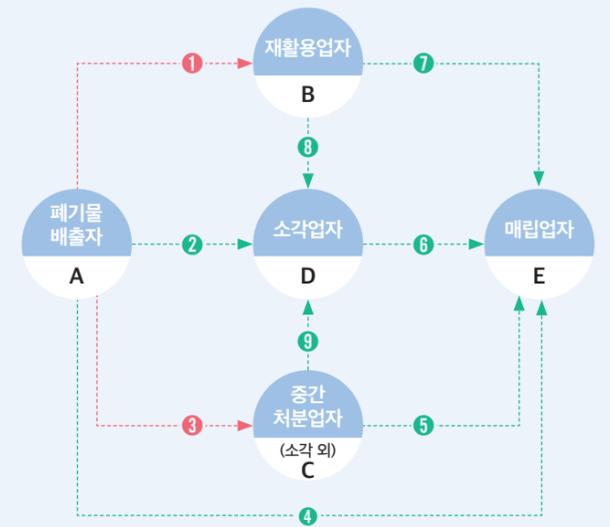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사업장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제1항

[참고] 폐기물 처리체계에 따른 납부의무자



- 1, 3 소각 또는 매립되지 않으므로 부과 대상이 아님
- 2, 4 부과 대상이며, 폐기물배출자인 A가 납부의무자
- 5, 6, 7, 8, 9 부과 대상이며, 새로운 폐기물배출자가 되는 B, C, D가 납부의무자

부과대상 폐기물 및 처리방법

부과대상 폐기물

생활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이상의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부과대상 처리방법

소각 처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소각시설에서 처분하는 것

- ① 일반 소각시설
- ② 고온 소각시설
- ③ 열분해 소각시설(가스화시설 포함)
- ④ 고온 용융시설
- ⑤ 열처리 조합시설

(①에서 ④까지의 시설 중 둘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

매립 처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에서 처분하는 것

- ① 차단형 매립시설
- ② 관리형 매립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금지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음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원칙 및 준수사항)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및 부과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에 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



※ 산정지수 : 최초의 적용연도(2018)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에 가격변동지수(환경부장관 고시)를 곱한 값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지수	1.019	1.023	1.024	1.059	1.132	1.16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

폐기물 유형	요율	
	매립하는 경우	소각하는 경우
1. 생활폐기물	kg당 15원	kg당 10원
2.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제외)	불연성	kg당 10원
	가연성	kg당 25원
3. 건설폐기물	kg당 30원	kg당 10원

※ 불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의 요율 적용
 ※ 가연성폐기물과 불연성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경우 가연성폐기물 요율 적용
 ※ 사업장폐기물 불연성·가연성 구분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5] 및 「폐기물처분 부담금 사무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627호)」 제4조제2항 참조

부과·징수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부과·징수기관 → 시·도지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45조(권한의 위임), 제46조(업무의 위탁)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감면 대상	감면 비율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접 설치·운영하는 폐기물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고 별도로 매립한 후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재활용한 경우 나.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재활용한 경우	100% 50%
2. ※ (적용기준) 2023년까지 처분한 폐기물에 적용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각열에너지를 5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가. 소각열에너지를 75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나. 소각열에너지를 6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 소각열에너지를 5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75% 60% 50%
2-1. ※ (적용기준) 2024년 처분한 폐기물부터 적용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각열에너지를 3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가. 소각열에너지를 75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나. 소각열에너지를 7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 소각열에너지를 65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라. 소각열에너지를 60퍼센트 이상 65퍼센트 미만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마. 소각열에너지를 5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바. 소각열에너지를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75% 70% 65% 60% 50% 30%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라 제품·재료·용기에 대하여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해당 제품·재료·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4. ※ (적용기준) 2023년까지 처분한 폐기물에 적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연간 매출액 120억원 미만의 경우 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나.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경우	100% 50%
4-1. ※ (적용기준) 2024년 처분한 폐기물부터 적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연간 매출액이 600억원 미만인 경우 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나.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다. 연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라.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경우 마. 연간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인 경우 바. 연간 매출액이 40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인 경우	100% 90% 80% 70% 60% 50%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6.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섬」 및 「섬」 발원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섬 내에서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또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나. 가목 이외의 경우로서 부과·징수 대상자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재난으로 인한 피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100%
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오염의 방지 또는 매립시설의 사용기간 연장 등을 위해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거나 이미 종료된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굴착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의 환경오염 방지 또는 지역 주민의 안전 등을 위하여 불법 투기·방치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 이하 감면대상 세부기준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참조

폐기물처분부담금 과태료

미신고자 등은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위반행위	처분금액(만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50	70	10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2조제2항제2호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정기신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5조

- 신고대상자 : 매년 주기적으로 폐기물을 배출 및 처분하는 납부의무자
- 신고대상폐기물 : 전년도 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 처분량(1.1~12.31까지)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해당자)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7-28호서식]
-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해당자)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산정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분할납부(4회 균등분할) 가능하며 1회분은 5월 20일까지, 2회분은 7월 20일까지, 3회분은 9월 20일까지, 4회분은 11월 20일까지 납부

수시신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6조

- 신고대상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에 따라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을 배출하는 자로서 해당연도 중에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납부의무자
 - 폐업 등의 사유로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납부의무자

- 신고대상폐기물
 - 해당 공사, 작업 등의 시작일로부터 배출종료일까지의 소각 또는 매립 처분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해당자)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7-28호서식]

※ 소각열에너지 회수, 폐기물부담금 납부, 중소기업 감면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감면신청 후 감면금액 반환, 이 외 감면은 수시신고 당시 신청 가능

온라인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서면 제출 가능